

教育改革 실시와 高等教育의 自律性·秀越性 추구(1980~'90) —韓國 現代 高等教育체제의 發展과정 完—

李亨行
(延世大 教育學科)

韓國 現代 高等教育체제의 發展과정

1. 高等教育 체제 形成期(1945~'49)
2. 高等教育開放 정책과 量的 성장
(1950~'60)
3. 大學整備 단행과 高等教育의 量的 관리
(1961~'71)
4. 實驗大學 운영과 高等教育의 質的 관리
(1972~'79)
5. 教育改革 실시와 高等教育의 自律性·
秀越性 추구(1980~'90)

라 자신이라는 투철한 자주 정신과 새 시대에 알맞은 가치 체계를 정립하고 실천해야 했던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그 토대가 되는 경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 더욱 땀을 흘려 일해야 했다. 이처럼 역사 창조의 의지와 슬기와 힘을 계발·육성할 수 있는 것은 다름아닌 國民教育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새 시대를 향한 출발을 위해 國政의 여러 분야에 걸친 개혁을 단행하면서 아울러 교육 혁신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한 것도 교육이야 말로 국가의 百年大計이며 창조의 원천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견지에서 憲法에도 평생교육 조항을 명문화하였으며, 정부는 교육 혁신을 당면한 4 대 國政指標의 하나로 설정하고, 교육 풍토의 쇄신과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나갔다.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로 채택되었던 교육 개혁은 전인교육 및 정신교육의 2 대 理念과 과학

1. 1980年代의 概觀

정부는 '80년대의 역사적 전환기에 처하여 민주·복지·정의사회를 구현해야 할 시대적인 요청을 절감하면서 새 역사 창조의 의지를 보였다. '80년대는 우리에게 보다 높은 단계의 국가 정의의 성취가 요구되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스스로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民族中興의 主體는 바로 우

교육 및 평생교육의 2대 原理를 4대 原則으로 하였다.¹⁾ 이 원칙들은 李奎浩·權英赫·孫製錫·徐明源으로 이어지는 문교부 장관들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실행되었다.

한편, '82년 4월에는 韓國大學教育協議會가 전국의 4년제 대학(교) 총·학장이 회원이 되어 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고양하며 대학의 상호 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기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또 '85년 3월에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교육정책 자문기구인 教育改革審議會가 설치되었다. 이 심의회는 교육의 과학화·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교육 내용과 제도의 개선 등 교육 문제 전반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교육의 기본 정책 및 장·단기 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限時的으로 설립되었다. '87년 6·29 宣言으로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특히 같은 해 9월 25일 문

교부가 '대학자율화실천계획'을 발표하면서 大學行政의 民主化와 大學運營의 自律化를 맞게 되었다.

'88년 2월 25일 盧泰愚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제6공화국 정부가 출범한 후 金永植, 鄭元植 문교부 장관으로 이어지면서 문교 시책의 기본 방향은 미래에 대비하는 교육 개혁 추진에 두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文教指標로서 ① 새 세대의 가치관 확립, ② 기초교육의 내실화, ③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④ 평생교육 제도의 발전, ⑤ 교육의 자율성 신장 등을 설정해 놓고 있다.²⁾ 이 시기에 있어서 고등교육의 變化推移와 私學의 비중을 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공립 고등교육 기관 수가 약간 감소하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고등교육 기관 수, 교원 수, 학과 수는 안정적인 변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학생 수에 있어서는 '80년 7·30 教育改革措置의 일환으로 畢業定員制가 실시되면서 학

<표 1> 고등교육에 있어서 사립의 비중('80~'89)

연 도	설립 별	학 교 수	학 생 수	교 원 수	학 과 수
'80	국·공립 사 립	67 157	147,426(115,434) 416,571(287,545)	6,401 14,109	1,049(673) 2,721(1,902)
'81	국·공립 사 립	68 164	184,367(146,364) 550,685(389,512)	7,057 16,847	1,125(706) 2,939(2,022)
'82	국·공립 사 립	67 169	220,729(178,839) 663,079(482,286)	8,298 18,751	1,186(751) 3,219(2,173)
'83	국·공립 사 립	56 183	246,425(206,742) 754,704(566,165)	8,882 20,501	1,296(853) 3,354(2,238)
'84	국·공립 사 립	49 183	270,405(231,156) 844,330(639,014)	9,516 21,879	1,372(876) 3,659(2,471)
'85	국·공립 사 립	50 181	284,508(243,378) 907,664(688,506)	9,786 23,290	1,422(910) 3,161(2,216)
'86	국·공립 사 립	50 181	285,938(246,776) 951,782(724,351)	10,238 24,451	1,423(931) 3,125(2,250)
'87	국·공립 사 립	50 183	289,352(245,546) 980,665(749,957)	10,624 25,129	1,448(976) 3,179(2,290)
'88	국·공립 사 립	50 184	287,958(245,483) 1,001,299(758,165)	11,050 26,277	1,527(1,080) 3,494(2,546)
'89	국·공립 사 립	50 182	288,857(246,868) 1,040,137(773,903)	11,561 27,792	1,605(1,136) 3,756(2,718)

*주 :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교)만 포함됨(대학원 및 각종학교 제외).

학과·학생 수에서 괄호 안의 숫자는 4년제 대학의 수치임(교육대학 제외).

**자료 :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80~1989.

1) 孫仁銖, 「韓國教育思想史 IV」(서울 : 文音社, 1989), p.1754.

2) 「上揭書」, pp.1838~1839.

생 수가 급증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등교육 기관의 확충없이 학생 수만 늘게 되어 교육의 질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고등교육에 있어서 私學이 차지하는 比重은 학교 수 79%, 학생 수 76%, 교원 수가 70%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표 2>에 예시된 세계 각국의 私學依存度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私學活性化를 위한 支援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私學政策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표 2> 각국의 고등교육에 있어서 사학 의존도

국명	연도	전체 학교 수 (사립학교수)	사학의존도 (%)
일본	1987	1,075(797)	74.1
미국	1987	3,301(1,808)	54.8
프랑스	1983	583(14)	2.4
영국	1986	799(46)	5.8
소련	1984	892(0)	0
중국	1984	1,002(0)	0
한국	1988	234(184)	78.6

*주 : 학교 수는 일본—대학(公/私 : 131/334), 단기 대학(89/459), 고등전문(58/4); 미국—종합대학(94/62), 대학(470/1383), 단기 대학(929/363); 프랑스—대학(77/14), 기술단기대학(66/0), 김나지움(300/0), 사립학교(300/0); 영국—대학(0/46), 폴리테크닉·계속교육 기관 등(753/0).

**자료 :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88.

일본에 대한 자료는 「문교통계요람」, 1987; 「교육의 국제지표」, 1986.

2. 7·30 教育改革措置

1) 大學入試制度의 改革

'80년의 정치적 격동기에 조직된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는 7·30 교육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것은 '교육 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소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공포되었으나, 교육 개혁의 핵심이 대학입시 제도의 혁신을 포함한 고등교육 정책 전반의 개혁에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7·30 교육 개혁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³⁾

① '81학년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하고, 출신 고등학교의 內申成績과 대입 예비고사 성적만으로 대학 입학자를 선발한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현행 教科目 수를 줄이고, 그 수준도 낮추는 방향으로 教育課程을 재조정한다.

③ 대학에 卒業定員制를 실시하여 신입생은 모집 정원보다 일정한 수를 더 입학시키되 졸업은 認可定員數로 시킨다.

④ 대학의 강의를 하루 종일 개설하여 대학의 시설과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全日制授業을 시행한다.

⑤ 대학의 문호를 넓히기 위해 입학 인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며, '81년에는 최고 10만 5천 명까지 증원할 것을 결托한다.

⑥ 현행 TV 가정고교방송의 운영을 개선하여 방영 시간과 대상 과목을 늘리는 한편 '81년부터는 교육 전용 방송을 실시한다.

⑦ 방송통신대학을 확충하고, 교육대학의 屆修年限을 연장한다.

이와 같은 시책과 병행하여 과외수업 追放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이 곧 7·30 교육 개혁 조치이었다. 즉, 7·30 교육개혁은 과외수업 금지와 대학 입시의 개혁 및 졸업정원제의 도입 등이 그支柱를 이루었다. 7·30 교육 개혁에 있어서 과외수업 금지와 대학 입시 개혁은 서로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으며 개혁의 核心을 이루는 것이었다. 대학 입시 개혁에는 두 가지 사항이 포함되었다. 그 하나는 종래 각 대학별로 치르던 대학 본고사를 폐지하고, '69년 이래 시행해 온 대입 예비고사 성적만으로써 학과시험 성적으로 삼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처음으로 高校內申制를 도입한다는 것이었다.

대입 예비고사는 '82년도부터 大學入學 學力考查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리고 '86년도와 '87년도에는 대학별로 論述考查가 부과되기도 하였으나, '88년도에는 대입 학력고사의 출제에 있어서 主觀式 문제를 혼합시키고 학력고사의 관리와 채점을 각 대학에 맡겨 결국 대학별 錄衡에 의한 학력고사 및 내신제의 병행제로 바뀌게

3) 京鄉新聞社 編, 「要錄 第5共和國」(서울 : 京鄉新聞社, 1987), pp. 610~611.

되었다. 그것은 입시제도의 대학 자율화를 지향하는 조치로 간주되었다.

2) 卒業定員制의 實施

7.30 교육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졸업정원제의 실시였다. 그것은 入學定員制에서의 정책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대학의 문호를 확대 개방하여 재수생의 누적을 감축시킴으로써 교육의 경상화에 기여하겠다는 목표에서 단행되었다. 또 졸업정원제는 私立大學의 財政難을 완화시키겠다는 뜻도 담고 있었다. '81년도 신입생부터 졸업정원의 30%(전문대학의 경우 15%)를 가산한 수를 입학시키고 초과 모집 정원은 중도에 강제 탈락시키겠다는 내용이었다. 그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⁴⁾

① 졸업정원은 대학·학부·계열·학과별로 책정한다(단, 계열별로 정원이 책정된 경우에는 학과별 최소 졸업정원을 학칙으로 규정한다).

② 2학년 말까지 졸업정원 초과 인원의 60% (가산정원의 18%)를 中途修了시키고 4학년(7학기) 등록 학생은 졸업정원의 33%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학별로 大學學事改革委員會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④ 수료의 방법과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각 대학의 총·학장이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한다.

그러나 졸업정원제는 표방된 명분과는 달리 학생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획일적인 기준의 적용으로 우수 학생의 강제 탈락이 불가피하였고, 相對評價(규준 참조 평가)의 도입이 불가피했으므로 학생간 및 교수와 학생 간의 인간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일부 대학에서는 學事의 면책 운영으로 중도 탈락을 피하기도 하였으나, 중도 탈락자의 자살 소동으로 사회문제화되기도 하였다. 마침내 '83년에는 졸업정원제 수정을 위한 11개 조항의 개선책이 시달 되었고, '84년에는 30% 초과 입학 기준을 각 대학의 자율에 일임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그리고 '88년에는 졸업정원제를 완전 폐지하고 입학정원제로 還元措置하였다. 따라서 졸업정원제는 그 시행 과정에서 허다한 부작용만 남기고 완전 백지화되었다.

3) 기타 高等教育 改革措置

고등교육 개혁 조치 가운데 教育大와 放送通信大의 4년제 체제로의 昇格改編 조치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다. 初等敎員養成機關은 2년제 초급대학 수준의 교육대학 시기를 거쳐 4년제 교육대학으로 개편되었으며, 그것은 '81~'84년까지 전국 11개 교육대학이 정규 4년제 대학으로 개편됨으로써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선진국형으로 탈바꿈하게 된 셈이다. 따라서 교육과정도 140학점 기준으로 개편되었으며, 교양 및 전공 외에 일종의 부전공으로서 심화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卒業論文도 필수로 부과하게 되었다. '81~'87년간에 1,159명의 교수 확보 계획(부족 인원 622명)이 추진되었고 시설의 보완과 학생의 유인 체제 확립 등도 함께 추진되었다. 초등교원의 任用積滯問題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4년제 교육대학은 정책의 전전을 의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방송통신대가 2년제 초급대학 체제에서 4년제 대학 체제(실제로는 5년 이상이 소요됨)로 개편된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다. '72~'80년 간의 초급대학 체제를 거쳐 '81년부터 學士課程을 설치하고 '82년부터 독자적인 國立大學으로 개편·운영되었다. 방송통신대는 평생교육 체제에 의한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에 공헌하였으며, 개방교육 체제로 성인의 교양교육에도 공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4) 私學運營 刷新施策

'80년은 한국 정치의 격변기로서 새로운 정치 체제가 형성되어 가던 시기였다. 당시 國政 전반을 주도하였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구시대의 모순을 청산하고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건설한다는 기치 아래 社會淨化運動을 추진하였다.

4) 金鍾皓, 「韓國敎育政策研究」(서울: 敎育科學社, 1989), p. 200.

세 시대, 세 사회를 표방한 이 운동은 교육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세 교육, 세 학원 풍토가 강조되었다. 실제로 교육문제는 모든 국민에게 관련된 중대한 사회 문제의 하나였고 그중에서도 고등교육은 국가 발전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됨으로써 정치 체제 변동 과정에 있어서도 고등교육의 質管理를 위한 정책 수립은 중요하고도 급박한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1차로 대학입시제, 졸업정원제, 과열과의 금지 및 교육정상화 시체을 주요 내용으로 한 7·30 교육개혁을 단행하였던 것이다.

한편, 정치 질서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분출된 사회 각계 각종의 차울화 요구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였으며, 전 고등교육 기관의 71.6%를 차지하고 있던 사립대학은 族閥體制 運營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즉, 학교 설립자 및 그 가족이 총·학장과 재단 이사장을 독점하는 동설립자의 학교 운영에 대한 專橫으로 인해 학교 발전에 장애가 되고 각종 부조리가 성행하였는 바, 이는 學閥驕縱의 多發的 要因이 되기도 하였다. '80년 8월 18일까지 4개 사립대학의 총장이 사퇴하여 이른바 族閥私學은 일단 정비되었고, 이를 계기로 사학 운영에 대한 개혁 여론이 높게 일었다.

이에 전국 85개 대학(교)과 11개 교육대학 총·학장들은 '80년 8월 19일에 회의를 갖고 대학의 기능 회복을 위한 새 질서 확립을 결의하였다. 여기서 李奎浩 문교부 장관은 “대학에서는 연구와 교수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자유는 진리 탐구의 절대적 조건이고 이러한 자유는 어떤 이데올로기적 제약도 받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대학이 누려야 할 자유는 학문 연구와 교육을 위한 자유이지 집단 행동을 통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유는 아니며 폭력을 사용하여 정부를顛覆시킬 수 있는 자유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하여 학원내 질서 유지를 강조하였고, 총·학장들은 4개항의 결의문을 통해 ① 전국적 사회정화 운동에 참여하여 학교 정상화에 앞장설 것, ② 민족·민주·반공의 새 질서 확립에 뜻을

같이 할 것, ③ 대학을 학문의 전당으로 재정립하는 데 충력을 다할 것, ④ 대학교육 개혁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⁵⁾

이와 함께 당시 실질적인 국경 운영 기관이었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사학 운영에 관한 5개항의 시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國保委는 사학 운영의 부조리와 학사 부경을 없애고 신뢰를 회복시켜 사학의 발전을 꾀한다는 목표 아래 사학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⁶⁾

① 學校法人과 學校經營의 分리

學校財團은 法人運營만 전담하고 학교 경영에 대한 간섭을 막는다. 이를 위해 학교법인 理事會는 총·학장의 任免權과 법인 운영권 등만 갖도록 하고 학교장이 전 교직원을 임면하도록 하며 학사 운영 및 학교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학교 경영 일체를 관장하게 한다. 즉, 학교 설립자와 그 配偶者, 直系尊卑屬을 포함한 재단측은 학교 운영에 간여하지 못하게 하여 재단으로부터 학교 경영의 자립성과 특자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② 財政의 正常化

총·학장과 각 처장, 교수들로 大學財務委員會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이들이 학교 재정 운영에 참여하여 예산·결산의 집행 및 감독을 맡도록 한다. 또한 財務會計制度를 개선하기 위해 資本會計制度를 資本會計와 收支會計로 구분하고 基本金과 剰餘金의 增減을 명료하게 표시하여 複式寄附制를 의무화한다.

③ 監查機能의 強化

公認會計士를 이사회의 監查로 임명하도록 의무화해 연 1회 학교법인 및 학교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당국에 보고하도록 한다. 그리고 문교부 등 감독청은 2년에 한 번씩 정기 감사(종전 3~5년에 한 번)를 실시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④ 學事不條理의 是正

청강생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 편입 제도를 개선

5) 「朝鮮日報」, 1980년 8월 20일자.

6) 「中央日報」, 1980년 8월 19일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별로 전·후기로 나누어 신입생을 선발할 때 편입생을 일괄적으로 뽑고 편입 요강, 합격자 명단, 미등록자 결원 보충방법 등을 교내 신문이나 개시판에 공고하며 편입 학 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⑤ 私學支援金制度의 創設

사학의 資產增殖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학 지원금 제도를 창설하여 음성적 기부금을 양성화한다. 이를 위해 특정 학교나 특별한 용도를 위한 지정 회사금과 비지정 회사금을 받아 연구비, 장학금, 시설비에 충당하도록 한다.

이들 시책이 갖는 의미를 살펴 보면, 우선 학교법인과 학교 경영을 분리하려고 했던 것은 사회의 비난 대상이 되었던 대학의 족벌적 운영과 承繼, 학원의 私企業化 현상을 근절하여 학교법인으로부터 학교 경영의 자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책은 '81년 2월 28일 私立學校法의 개정을 통하여 사립대학의 설립자와 대학의 長의 權限과 責任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대학의 설립자가 대학 행정에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였다. 그리고 대학재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무회계 제도를 개선한 것은 학교를 재산 중심과 영리 수단으로 삼아 기업화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정상화와 사학 운영의 공공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임용하는 등 사학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사학 소유자의 財產流用을 방지하고, 학사 부조리를 시정하고자 했던 여러 조치들은 재무상의 부정을 사전에 봉쇄하고 부정 수입을 원천적으로 막으며, 입학 정원을 둘러싼 대학과 정부 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規制的·淨化的 성격을 지닌 관리 전략 이외에도 사학의 支援 및 助成方案의 하나로서 사학 지원금 제도를 창설하여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도화한 것은 사학 재정의 細緻性에서 비롯된 私學 非理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 대학의 교육 재정 규모 중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표 3>에서 보듯이 매우 커서 지원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표 3> 교육 재정의 국·공·사립간 비교('79년)
단위: 1 억 원, (%)

학교별 설립별	국민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전문 대학	대학	계
국·공립	4,889 (98.1)	1,518 (60.6)	1,175 (42.6)	119 (19.6)	568 (28.5)	8,269 (64.4)
사립	94 (1.9)	987 (37.4)	1,584 (57.4)	487 (80.4)	1,423 (71.5)	4,575 (35.6)
계	4,983	2,505	2,759	606	1,991	12,844

<표 4> 사립대학 납입금 의존도('80년)

단위: 1 억 원

내용 구분	납입금	전입· 기부금	기타	계
금액	1,796	201	183	2,180
구성비(%)	83	9	8	100

그리고 '80년 당시 전국의 대학 중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학교 수에 있어서 76.5%, 학생 수는 70.4%에 달하였으나, 이들 사립대학의 재정은 <표 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학생들의 納入金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사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요청된 상황에서 내려진 조치라고 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국보위의 사학 운영 쇄신책은 私學의 私物化·企業化를 방지함으로써 사학의 公共性을 양양하고 고등교육 기관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30 교육 개혁이 교육 내용과 제도에 관한 개혁이라면, 당시 '제2의 教育革新'으로까지 일컬어졌던 사학 운영 쇄신책은 교육 기관 내의 체질 개선에 관한 것이라고 하겠다.

3. 韓國大學教育協議會와 教育改革審議會 設置

1)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의 設置

대학은 기본적으로 고도의 自律性과 創意性이 강조되는 최고 교육 기관이다. 그 이유는 大學의 機能인 教授·연구·봉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자면 자율성과 창의성이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 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대학교육의 발전을 기하고자 자율성을 보장하며, 대학 행정의 전문화와 대학 간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호 협동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82년 4월 2일 설치되었다.

다시 말해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의 4년제 대학(교) 총·학장이 회원이 되어 대학 운영의 自主性을 높이고 公共性을 강화하여, 대학의 상호 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전진한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82년 4월 2일 전국 97개 대학(교) 총·학장들이 창립총회를 가짐으로써 출범하게 되었고, '82년 10월 8일자로 公益社團法人體로 발족되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대학간 협의체로 설치된 이후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⁷⁾

① 대학교육 제도와 운영에 관한 전문적 研究機關으로서의 기능, ② 회원대학의 공동적 과제에 대해 협의와 조정을 하며, 필요한 경우 대학 사회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 ③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에 대하여 자문이나 견의를 하며, 새로운 교육 정책을 회원 대학에 확산하고 보급하는 制度機關으로서의 기능, ④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해 가는 자율적 評價機關으로서의 기능, ⑤ 회원대학의 권익 보호와 필요한 교육 정보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奉仕機關으로서의 기능, ⑥ 회원 대학이 필요로 하는 사업의 연구 개발 및 실행 방안을 직접 추진하는 執行機關으로서의 기능 등이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⁸⁾

① 大學評價事業

전국 4년제 대학(교)의 學事·財政 등 기관 운영과 학문 영역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대학 자체평가와 평가위원의 현지 방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적인 학사 개혁을 통하여 대학교육의 내실을 촉진하고, 각 대학과 유관 기관에 대하여 행정 및 교육 발전의 준거가 될 자료를 제공하여 전체 대학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한다. 여기에는 크게 기관평가 대상 분야, 학문 영역별 평가 대상 분야, IBRD 借款事業 평가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기관평가 대상 분야는 대학의 관리 및 운영, 대학원 과정의 학사 운영, 재정 및 경영 상태의 실태 분석 및 운영 내용 등이다. 주요 학문 영역별 평가 대상 분야는 각 학문 분야의 교육 여건 및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어문학계, 인문학계, 사회과학계, 기초과학계 등)를 실시한다.

② 大學教育改革 調査研究事業

이에는 정책과제 연구, 대학 재정 발전 연구, 대학교육 시설 연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책 연구 사업은 주로 전국 대학(교)의 공통 과제와 당면 과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여, 대학 재정 발전 연구 사업은 대학 재정 구조의 모형개발과 그 재정 확보 및 효율적 경영 방안을, 그리고 대학교육 시설 연구 사업은 대학교육 시설의 재정 규모에 관한 모형을 개발하고, 대학교육 시설 개선을 위한 기본 지침 제시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③ 大學 行政·管理職 幹部研修

대학 경영 실무자의 직무 수행 능력을 提高하고, 대학간 정보 교환과 대학 관리 체제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85년부터 매년 대학 행정적 간부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④ 大學教育發展을 위한 세미나

외국 대학이나 대학간 협의체와 연계하여 대학 운영에 있어서 새로운 이론과 실용적 모형을 개발하고, 대학 경영자 간의 정보 교환 및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7) 韓國大學教育協議會法(법률 제3727호)의 제3조(機能) 및 韓國大學教育協議會 定款의 제4조(事務) 참고.

8) 韓國大學教育協議會,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의 役割과 機能」, 1986.

왔다. '85년 5월부터 일본·미국 등 여러 대학의 고등교육 관계 인사와 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대학교육의 당면 과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을 통해 실용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확산·보급하기 위해 매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원대학(교) 보직교수 및 관계 인사를 대상으로 국내 세미나를 개최하여 왔다.

⑤ 會誌「大學教育」發刊

회원대학과 유관 기관에 대학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여 상호 발전과 교육 내실화를 촉진하기 위해 격월간지 「大學教育」을 6,000부 발간하여 전국 각 대학에 배포하고 있다.

⑥ 大學關係者 國際交流活動

매년 세계 각국의 대학교육 저명 인사 3~4명을 초청하고, 본회 임직원 및 관계 인사 3~4명을 해외에 파견하여 자료 및 정보를 교환하며, 교수·학생 교류를 주선하고 대학 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해 왔다.

⑦ 大學間協議體 運營支援事業

대학원장협의회, 교무처(과)장협의회, 사무처(과)장협의회, 사립대학 재정 실무자회, 대학신문지도교수협의회 등의 각 기능별 세미나를 준비하거나 대행하며, 세미나 기본 경비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의하고 있다.

⑧ 資料室 運營 및 圖書配布事業

대학교육에 관한 국내·외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배포하며, 교육 현장에서 유용한 자료를 회원대학에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있다. 또한 대학교육에 필요한 각종 도서 및 문현을 아시아財團과의 협력으로 회원대학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수초빙정보실을 운영하며 연구 및 평가보고서를 대학 및 유관 기관에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2) 教育改革審議會의 發足

교육 혁신은 교육을 통하여 국가 발전을 위한 역사적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세계적인 교육 개혁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지는 일련의

조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85년 3월 7일자로 教育改革審議會 規程을 제정·공포하여 3월 18일자로 審議委員과 事務委員을 위촉하였다. 심의위원은 학계·교육계·경제계·언론계·문화계·과학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지도급 인사로 32명을 위촉하였고 전문위원은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초·중등 교원 등 20명을 위촉하였다. 이들은 教育制度·初中等教育·高等教育·教育發展 分科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부과된 42개의 과제를 추진하였다.

교육개혁심의회의 운영은 심의위원과 전문위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체 회의, 각 분과의 분과위원회, 그리고 분과위원장들의 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공개토론회, 세미나 등으로 이루어 진다. '85년 3월 교육개혁심의회가 발족된 후 '87년 12월 8일 교육 개혁에 관한 '綜合構想'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까지 전체 회의는 47회, 분과위원회는 118회, 운영위원회와 전문가협의회를 합쳐 192회, 그리고 공청회, 공개토론회, 세미나 등을 합쳐 28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에 동원된 연 인원만도 1만 5천여 명에 달하였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정기회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교육개혁심의회의 전반적인 구상과 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이것은 교육개혁심의회의 다음과 같은 공식적 입장에서 분명히 드러난다.⁹⁾

“——대통령 직속의 심의 기구를 설치한 것은 사상 초유의 결단으로서 최고 統治權者の 教育改革에 대한 意志를 반영한 것이며, 국민 여론을 기반으로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는 政策意志의 表象이며, 교육을 통하여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하겠다.——”

즉, 교육개혁심의회가 정치권력의 개혁 의지를 표현함과 동시에 교육을 통해 경제 부문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를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아 정권의 正當性 확보로 표현한다면, 후자의 경우는 수출 경쟁력 신장을 위한 우수 인력의 확보, 다시 말해서 교육의 秀越性 추

9) 教育改革審議會, 「教育改革」, 1985, p. 33.

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말하자면 교육개혁심의회는 이상과 같은 두 가지 과제를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개혁심의회가 구상하고 있는 교육 개혁의 방향은 2000년대 국가 발전의 전망에 따라 연역적으로 주론되고 있다. 즉, 21세기를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규정하고 이러한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① 韓國人의 精持를 심는 교육, ② 全人을 지향하는 교육, ③ 創意性을 기르는 교육, ④ 미래에 대비하는 교육, ⑤ 수월성의 추구, ⑥ 다양성의 조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⁰⁾ 이러한 인간상과 교육 개혁의 방향은 매우 추상적이다.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교육 개혁의 방향을 추출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제외시키면, 교육 개혁심의회의 기본 개혁 방향으로서 다양성과 수월성 추구의 교육이라는 기본적인 틀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개혁안을 보더라도 교육개혁심의회의 기본 개혁 방향이 바로 다양성과 수월성의 강조라고 할 수 있다.

교육개혁심의회는 '85년 3월 발족한 이후 총 42건의 과제를 설정하고 각 과제별로 개혁안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개혁 과제는 내용상 교육의 전 영역을 망라하고 있으며, 이들을 教育改革綜合報告書에서는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특수교육, 평생교육, 미래교육, 교원교육, 교육시설·환경, 교육 행·재정 운영의 10개 부문으로 정리하여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교육 개혁을 위한 종합구상에 있어서는 교육의 전 영역과 부문이 거의 망라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개혁 방안들을 교육 개혁의 핵심적인 축이라는 시각에서 재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10대 교육 개혁의 방안을 제시하였다.¹¹⁾

- ① 학교 제도의 개편
- ② 입시 제도의 개혁

- ③ 학교 시설의 현대화
- ④ 우수 교원의 확보
- ⑤ 교육 내용과 방법의 혁신
- ⑥ 科學頭腦의 개발
- ⑦ 대학교육의 秀越性 추구
- ⑧ 평생교육 체계의 확립
- ⑨ 교육 행정의 자율화
- ⑩ 教育投資의 획기적 증대

또한 교육개혁심의회가 제시한 私學政策은 우리나라 教育理念을 바탕으로 교육의 정상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의 機會均等이 보장되도록 추진하는 것을 基底로 하는데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수립되도록 한다고 했다.¹²⁾

첫째, 私學의 自主性과 特殊性은 존중되어야 하며,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운영에 바탕을 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둘째, 사학의 발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필수 교육비의 확보는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公費助成은 재정 지원의 정당성 기준에 따라 효율성이 추구되도록 한다.

셋째, 私學의 公信力を 높이기 위하여 私學行·財政 및 人事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넷째, 私學政策은 사학의 利害當事者인 학생, 학부모, 교원, 학교장, 학교법인 및 국가사회 전체가 이익을 共有할 수 있도록 수립한다.

다섯째, 私學政策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변화와 교육 목적, 교육 내용, 교육 방법의 발전에 맞추어 추진되도록 부단히 연구하고, 급격한改革보다 점진적改善을 지향하여 추진되도록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80년대의 시작과 더불어 출범한 제5共和國은 教育革新을 國政指標로까지 내세우고, 교육 개혁의 기본 방향을 全人教育 및 精神教育의 2대理念과 科學教育 및 平生教育의 2대原理로 삼았다.

이 시기의 고등교육은 '70년대와 마찬가지로 양적인 성장 면에서는 매우 안정적인 증가 추세

10) 教育改革審議會, 「最終報告書-敎育改革綜合構想」, 1987, pp. 84~91.

11) 教育改革審議會, 「10大敎育改革」(서울:敎育改革審議會, 1987).

12) 郭泳宇外, 「私學政策의 补完」(서울:敎育改革審議會, 1986).

를 보였고,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그 방법 면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적 참여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조성 정책이 강구되었다. 우선 정부는 '80년 7월 30일에 '教育正常化 및 過熱課外解消方案'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개혁 조치를 단행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대학 본교사의 폐지와 고교 내신제의 도입, 대학 졸업 정원제의 실시, 방송통신대학과 교육대학의 4년제 대학으로의 승격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私學運營刷新에 관한 施策을 발표하여 학교법인과 학교 경영을 분리하고 재정을 정상화시키며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학사 부조리를 시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평생교육 이념에 따라 開放大學을 창설한 것도 매우 획기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미 '70년대 실험대학 운영 과정에서 실시되었던 대학 평가 활동을 통한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은 '80년대에도 계속되었는데 '82년 이후에

는 韓國大學教育協議會가 주관하여 실시해 왔다. 그리고 '85년에는 教育改革審議會가 설치되어 多樣性과 秀越性의 추구라는 이념 아래 고등교육정책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교육의 정상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이 보장되도록 活性化 方案을 강구한 바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들이 자율성 신장과 수월성 추구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때,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 역시 이들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즉, 고등교육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사회적 公器로서의 대학에 대한 규제 측면과 대학의 발전을 위한 조성이라는 양 측면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 자신은 사회적 공신력과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의 질을 스스로 향상시키는 노력은 물론 교육 목표,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에 있어서 나름의 독자성을 견지하여 특성화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